

제439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9월14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4)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61)

상정된 안건

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4) 1

(10시05분 개의)

○소위원장 이해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자료상 주제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법안1소위의 이광희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정현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의원 박정현입니다.

원래 1소위를 소망했으나 2소위로 밀려났는데 오늘 다시 1소위로 오게 돼서 무지하게 기쁩니다.

1소위에서 제가 낸 법 마을공동체 기본법도 다뤄야 되고 해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4)

(10시07분)

○소위원장 이해식 의사일정 제1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행안부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월 정기국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논의를 충실하게 지원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중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하실 내용은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수청법 중 총 4개 쟁점을 논의하시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대범죄의 중복규정 정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재수사의 근거 명시, 인지 사실이 통보된 범죄수사에 대한 이첩 요청 근거 마련, 시행일 관련입니다. 이 사항들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1번 중대범죄의 범위 명확화 및 중복규정 정비 관련입니다.

중수청법상 ‘중대범죄’란 부패, 경제, 마약, 내란·외환 등 관련 범죄를 말하고 ‘중대범죄 등’이란 공소청, 경찰, 공수처,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를 말합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의 중복 및 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중대범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현행의 제2조제1호 가목·나목의 중대범죄와 마목의 중대범죄가 일부 중복되는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쪽 표를 보시면 마목의 형법 제356조는 가목과 중복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나목과 중복됩니다. 따라서 마목에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관한 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보통신망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3쪽 좌측 표를 보시면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가 1·2·3·4·5호에 다 걸리는지 마지막에 걸리는지가 불명확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구별하여 3항 정보통신망법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사이버범죄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를 사이버범죄에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컨대 개정안은 중대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재수사의 근거 및 범위 명시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 등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으로부터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를 받은 범죄를 포함시키면서 이러한 대상 범죄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곱 가지 범죄, 즉 성폭력, 아동·청소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토론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중수청의 기능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므로 보완·재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중수청법에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예외규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등 보완수사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보완·재수사 대상을 사회적 약자 관련 7개 범죄로 한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나 연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거나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안은 중수청의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통해 수사의 충실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8쪽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는 수사기관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박스를 보시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르면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수청법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송된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할지 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수청의 보완수사·재수사 외에 이러한 이송 요구된 범죄도 포함시킬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의 주체를 개정하여야 하는지 혹은 개정안을 형사소송법에 맞춰 규정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 하단 박스를 보시면 형사소송법은 보완수사 요구의 주체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으로 하고 있고 이에 반해 재수사 요구는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수청법 현행 개정안은 둘 다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셋째, 개정안 제2조제2호 나목 후단은 이 경우 공소청이 중수청의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 요구를 한 범죄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곱 가지 범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일곱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보완·재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 외에도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보완·재수사를 하는 것까지도 제한하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중수청의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이므로 만약 경찰 등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일응 예상되는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7대 범죄로 한정한다고 하여 이에 따르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행안부의 의견을 듣고 개정안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3번 인지 사실이 통보된 범죄수사에 대한 이첩요청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중수청의 이첩요청 대상에 현행의 중수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등에 해당함을 인지하여 중수청장에게 통보한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대범죄 관련 수사기관 간 사건을 조정함으로써 중복수사로 인한 수사인력 및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인지 통보된 모든 중대범죄를 이첩요청 대상으로 할 경우 중수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되므로 중대범죄등 중 제2조제2호가목의 공무원 범죄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반해 행안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주체를 정하는 것이 중복수사 방지 및 중수청의 전문수사 기능에 부합하므로 개정안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 기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필요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시행일 관련으로서 개정안은 중수청법 제정안의 시행일인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도 추가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개정안이 입법에 반영 시 현행법 제2조제2호다목이 라목으로 변경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도 다목에서 라목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령도 적절히 그리고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먼저 1번 중대범죄의 범위 명확화 및 중복규정 정비에 관해서는요 전문위원의 중복 인용조문 삭제라든지 중의적 문구를 정비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 보시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재수사의 근거 및 범위 명시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에서 보완·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중대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8쪽 가운데 부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는 필요하다면 수사 대상을 추가할 필요가 있지만 대상은 마찬가지로 7대 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형사소송법에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치럼 중수청법도 그렇게 같이 보완수사 요구 주체를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14쪽의 3번인데요.

물론 경찰청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는 원안 유지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 주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또 중대범죄에 집중하도록 한 중수청의 전문수사 기능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사실이 통보된 범죄수사의 경우도 중수청의 이첩요청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쪽의 시행일은요 당연히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맞춰서 동의하고요.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가 당연히 시행령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9쪽의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전문위원의 의견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을 7대 범죄로 한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소청의 검사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의 보완수사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규정의 문언대로 해석한다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우려를 전문위원이 제시한 거지요? 그 취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예, 맞습니다.

○양부남 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7대 범죄에서 재수사가 필요할 때는 중수청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잡사건에 치여 가지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7대 범죄로 한정한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기의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검사가 중수청에 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 지적이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설립 취지를 봤을 때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당연히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그런 우려를 지적한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예,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다음에 논란이 없기 때문에 의미를 명확히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은 결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러면 법문을 좀 명확히 해야 되겠네요. 법문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그렇지만 먼저…… 그러니까 양부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7대 범죄에 한정해야 됩니다, 약자에 대해서. 다만 그게 좀

더 확장해석되면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되는 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중대범죄도 사회적 약자, 장애인·여성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중대범죄는 다 중수청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범죄에 한해서만 장애인·여성만 하겠다든지 그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확장해석을 해 버리면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중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설립된 중대수사청의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중대수사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다가 중대범죄수사와 7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면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춘생 위원** 수사 범위 관련해서요 중대범죄의 범위 명확화, 3쪽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중수청법 제정을 할 때 사이버범죄도 여기 들어가야 되냐. 왜냐하면 국수본에서도 사이버수사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가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단서조항이 그렇게 들어갔었던 거예요,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그러니까 사이버범죄를 넣되 대신에 단서조항을 한 건데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사이버범죄를 빼고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로 해 버리면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저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행안부에서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현행만 보면 국가핵심기반 중 사이버범죄기 때문에 핵심기반 공격하는 일반 범죄는 빠져 버리고 오로지 사이버범죄만 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제정 의도는 위원님 말씀처럼인데 현행은 좀 달리 돼 있습니다. 오히려 사이버범죄를 빼 줘야 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든 현실상의 범죄든 다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건 행안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가 사이버범죄가 들어갔을 때랑 아닐 때랑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지금 3쪽의 개정안을 보시면 마의 1·2에 ‘범죄와’ 해서 3을 한정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준 거고요. 위원님, 그것은 이해가 되시지요?

○**정춘생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다음에 그러면 3번으로 했을 때 정보통신망법 여기에서 기술유출과 사이버라는 것을 저희가 뺐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보다 수사 대상 범위는 약간 넘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랬냐면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이 자리 잡지 않고 있고요. 디지털이라든지……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그때 법안 제정할 때도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계속 했었던 거예요. 사이버범죄라고 규정을 하면 엄청나게 범죄가 다양해지는데 폭넓어지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지요. 그래서 ‘국가핵심기반 공격’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살려 둔 거고요. 그러니까 경미한 디지털 사이버범죄를 생각한 건 아니고요 국가핵심기반 공격인데, 예를 들어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자신은 없지만 이런 겁니다.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꼭 해킹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화재를 저지른다거나 그다음에

드론을 날려서 공격을 했을 때에도, 그러면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옛날 국정자료 화재처럼. 그러면 이 부분은 사이버냐 뭐냐라는 게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걸……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게. 그랬을 때에는 중수청에서 포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후에 정리하다 보니까 돼서 개정할 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큰 입법 취지에 맞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정부가 입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야……

○소위원장 이해식 정보통신망법상 여기까지의 범죄 중 그다음에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이 ‘국가핵심기반’이라고 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국가핵심기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이버를 삭제한 것은 사이버범죄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외부적인 공격, 다른 어떤 물리적 타격이 있다든지 공격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주요하게는 사이버범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춘생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런 취지이지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할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고요.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시설 공격, 사이버와 같이 연계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정춘생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리고 아까 양부남 위원님 말씀하신……

임호선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먼저……

○양부남 위원 제가 마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요구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하도록 돼 있지요. 공소청장은 6개의 공소청이 있지요. 그리고 채수사요구는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돼 있어요. 지금 왜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한지를?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채수사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체에 있어서 보완수사요구는 6개 공소청과 지청의 장이 할 수가 있다, 채수사요구는 각급 공소청의 장만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채수사요구가 7대 범죄에 한정된 것과 연동해서 해석을 한다면 7대 범죄는 전부 공소청 본청으로만 사건이 간다는 전제가 돼야지만이 이 법 개정의 합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7대 범죄는 지청으로 송치가 되지 않고 공소청 본청으로만 송치가 된다 이게 전제된다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맞지요. 이렇게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7대 범죄가 공소청 본청뿐만 아니라 지청에도 송치가 된다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이 형사소송법이 보완수사와 재수사요구 주체를 구분했는지부터 우리가 명확히 설명을 들어야지만 중수청법도 이에 연동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소청장으로 묶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매우 합리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 전제부터 좀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해식 혹시 여기 공소청 관계자 누구 나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공소청 관계자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제가 보기에는 짧은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완수사요구는 결국 송치를 한 이후에 검사가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으면 요구를 하는 것이어서, 일상적인 것이어서 지청장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반면에 재수사요구는 불송치 사건이어서 불송치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소청장에게만 권한을 준 게 아닌가, 조금 엄격하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245조의8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지청은 아니고 각급 공소청에서 하는 것이 예우를 갖추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었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중수청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요구든 재수사요구든 주체를 공소청장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해식 예, 그렇지요.

○양부남 위원 그러면 보완수사요구도 지청장은 못 하는 거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을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1번은. 197조의2제8항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청의 장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만이 취지에 맞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위원님.

○양부남 위원 위원장님의 해석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법사위에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임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14쪽, 15쪽 관련해 가지고 이게 비단 어제오늘의 논의는 아닌데 사실상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보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첩요청권이 결부되면 자칫 사건선택권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예전 논의 과정에서 죽 있어 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건의 중대성,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제가 시행령을 지금 찾아보지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에 이첩 사유라든지 필요성 같은 것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컨대 이첩요청서 같은 경우를 서면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되어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시행령 제20조 3항인데요, 3항에 보시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사건을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서면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첩 사유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컨대 저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예전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냥 일건 서류 송치할 것입니다. 이게 서면으로 통보됐다고 그래서 서면통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첩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이런 식으로 딱 구체적으로 했을 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서면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중수청 수사준칙 만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거기에 꼭 반영해서, 의원님실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아니,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이첩 사유와 필요성이 담긴 서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제가 다시 부가해서, 행안부의 의견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8쪽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체에 대해서 현재 중수청법 개정안은 전부 공소청장으로만 돼 있는데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에 있어서는 이걸 바꿔서 수정할 의견이다 이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러니까 공소청의 장 및 지청의 장.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좀 헛갈려 가지고, 여기 8쪽에 나와 있는 형사소송법과 똑같이 중수청법을 개정하자라는 취지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양부남 위원** 똑같이 개정안을 바꾸겠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돼 있는 내용을 중수청법으로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지요.

○**양부남 위원** 그대로 간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왜냐하면 중수청법보다 형사소송법이 늦게 개정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정리가 안 된 게 하나가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예, 아까 양부남 위원님 말씀 주신 9쪽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정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수청에서 중대범죄에 대해서 재수사·보완수사가 안 되고 이 7개만 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고 실제 행안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해석

에 따라서 현행 개정안처럼 가실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아까 양부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수사·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해 주시고 그에 맞춰서 조문이 필요한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확정해 버리면 나중에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장이, 지청장이 보완수사요구를 중수청에게 내렸을 경우에 중수청에서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해 버린다면 중수청이 생긴 취지가 반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다가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넣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차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8쪽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의 해석에 있어서는 중대범죄인 경우에도 7대 범죄에 한해서 시정조치 요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범죄 중에서도 7대 범죄에 한해서 받고 있는 거고요. 임호선 위원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지통보된 이첩 사안에 대해서도 했을 때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했을 때도 현재 시스템상 보통 통상적으로 중대범죄에 다 속하는 게 통계적으로 55만 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5억 원 이하는 경찰에서 하는 걸로 해서 7만 5000건 정도로 현재 통보받습니다, 저희가 받는 건. 그래서 그 중대에 하는데, 그러면 55만 건 중에서 7만 5000건 정도 빠졌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양부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안 같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이첩 통보권이 있습니다. 이첩을 요청할 권리가 법률상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이런 부분, 수사가 안 된다고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건 짚어서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경찰이 하는 걸 모두 다 갖고 오면 경찰의 수사 역량이 안 클 수 있고, 사실상 지금 시행 초기에 잘 정착해야 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에 특수화된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조금 우려가 있어서 시정조치요구권도 당초 그냥 평범하게 해석해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7대 범죄로 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행안부차관이 주장하는 논리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완수사요구 대상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완수사요구 받은 범죄에 7대 범죄도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라는 의미지 행안부차관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수사를 원래 일차적인 수사로 확대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찰에서 중대범죄가 뭐가 있습니까? 부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의 돈 100억 원을 수수했다. 경찰에서 수사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공소청 검사한테 보냈어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하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가 못 내려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대한 부패·경제 수사에서 초동수사가 아니라 보완수사를 중대범죄수사에 못 한다고 하면 뭐 하려고 중대수사청을 만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그런데 위원님 100억이나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찰이……

○**양부남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개념을 이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경찰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거는 5억……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5억.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사소한 거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 구청장이 돈 1000만 원 먹었다고 봅시다. 그거 경찰 수사할 수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양부남 위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어요. 공소청 검사가 보니까 이거 경찰에 수사를 맡겨 놓으면 안 되겠어요, 판단을 못 해요. 중수청으로 보내야 됩니다, 부패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물론 원래 수사 대상에서는 제한이 됐다 치더라도 이것을 중수청이 한번 걸러줘야지만 중수청이 원래 가지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완수사를 못 내리도록 한다면 중대수사청의 존립 의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과연 몇 건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차관님께서서는 중대범죄를 카테고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금액과 신분에 따라 나뉘는지 모르겠는데 일정한 범위로 나눠 놓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서 다 걸러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차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안 되는 부패 수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할 때 중대수사청에서 맡게 된다면 업무가 과중해서 어떻게 하냐는 취지 아닙니까? 나는 그 생각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제가 이해한 거는 그런 경우에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중대범죄는 기본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짜리인데 수사가 잘 안 되는 거 같고 논란이 된다면 저희가 이첩 요청을 해라,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걸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지금 이첩 단계가 아니예요, 보완수사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보완수사를 해도 이첩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부남 위원** 아니, 지금 공소청장이 이첩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자꾸 대화가, 지금 논점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상을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를 요구를 했다,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확대해석하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거지요.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첩요구가 아니예요.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진행의 단계와 주체에서 믹싱이 돼 갖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내 말의 취지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1차 수사부터 이첩을 받느냐,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일단 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대범죄수사가 끝났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공소청에서 이거 기소 여부를 판단 못 해, 보완수사를 해야 되겠어. 그런데 처음

수사를 했던 경찰 수사기관으로 보내는 건 적절치 않고 중대수사청으로 이 기록을 보내서 보완수사를 지휘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 규정을 확대해석하면 보완수사를 못 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지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첩 요구를 하면 저하고 대화 핀트가 틀리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해식 잠깐만요, 기존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할 때 공소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그거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이해식 그러니까 중대범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수청에다가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개정을 했는데 사회적 약자 범죄 부분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중수청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해서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하는 건데 이걸 보완수사나 재수사요구를 할 때 또는 시정조치까지 포함해서, 그럴 경우에는 중수청에도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걸 규정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본 문안 자체는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못 하는 것처럼 들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일단 그 부분이 맞습디다마는 좀 더 나아가면 행안부에서는 위원장님과 달리 해석해서 여기에만 한정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취지는 중대범죄와 관련해서는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할 때 공소청장이 이건 중수청에서 해야 돼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건 금액 과다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르면?

그렇다면 지금 이 법 문안 자체가 뒤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양부남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양부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잘했는데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청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이 할 수가 있어요.

제 설명 들어 보세요. 개정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공소청의 장은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이든 어떤 다른 타 기관이 수사한 사건이든 중대범죄든 절도든 사기든 이것을 중대수사청에 다 보완수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대수사청의……

제 이야기 들으세요.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어요. 중대수사청이 그렇게 된다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여러 기관에서 수사한 잡다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에너지가 소진돼서 원래 설립 취지가 반감된다 그래서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재수사를 7대 범죄로 한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것이지, 그 규정에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중대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재수사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은 이 문언이 확장해석됐을 때의 우려를 검토의견에 담았어요. 그런데 그 우려가 행안부차관의 이야기를 들으면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행안부에서는 지금 중대범

죄 재수사권을 받지 않겠다 하고 있어요. 이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정을 하면 안 돼요, 7대 범죄로 한정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원래 형사소송법으로 가야 돼요. 형사소송법 개정대로 원래로 가자고요, 논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 법 개정 안 해도 됩니다. 법 개정 안 하는 게 형소법 취지에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식 구조가 잘못됐어요. 우리 이 법 개정하지 맙시다. 말이 됩니까, 지금?

○소위원장 이해식 기존 7대 중대범죄,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기존 중수청이 하는 6대 범죄 플러스 1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이해식 거기에 법왜곡죄까지 7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르면, 취지가 아니라 개정 내용에 따르면 당연히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할 때 중수청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일반범죄 중에서 재수사요구나 보완수사요구나 시정조치요구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 중수청도 하게 한다. 다만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범죄에만 한정한다. 그러니까 기존 7대 범죄 플러스 사회적 약자 범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약자 범죄에 한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기존 중대범죄까지 한정해 버리면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이건 너무 상식적인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잘못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임호선 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고요. 그러면 양부남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부남 위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중수청을 왜 설립했냐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양부남 위원 중수청이 뭐 하는데 직원을 2000명 데려가냐는 말이 나와요. 말이 됩니까, 지금?

○임호선 위원 정리해서 답변을 주세요. 정리해서 답변을 주시라고 그래야지 기록에 남겨요.

○양부남 위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러면 양부남 위원님 말씀을 수용하신 거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사실 보고받기로는 이첩권을 행사하면 문제없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깊이 있게 생각 안 했는데요.

○양부남 위원 차관님, 사실 이첩하고는 논의 단계가 달라요, 지금 시점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말씀이 더 타당한 것 같고요. 그것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취지에 맞다고 해서 중대범죄에 한한 재수사·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러면 전문위원님……

○양부남 위원 참고로 중대범죄는 재수사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저희가 하는 거는 안 되지요.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중대범죄는 재수사요구 대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재수사요구 대상은 7대 범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요.

○**소위원장 이해식**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다음, 8쪽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시정조치요구에 따라서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부분도 고려해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 외에 이런 시정조치요구에 따라서 이송된 범죄도 중수청에서 다룰 수 있도록 추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합의를 보셨습니까마는 또 행안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조문을 직접 보시고 이렇게 해도 될지 이 부분의 결정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그리고 같은 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해서 이송된 범죄, 그러니까 이송할 것을 요구해서 이송된 범죄라는 거는 불송치했거나 아니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송을 요구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예, 다만 형사소송법의 시정조치요구에서 일단 최초의 불송치라든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불송치나 송치가 결정되기 전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가 좀 미흡하면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을 요구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그다음에 요구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따라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해서 ‘요구할 수’가 가정이 돼 있는데 주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재수사, 보완수사만 있으니 이 부분은 빠져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한 결과 이런 부분들 반영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정 조문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 수정조문은 행안부랑 합의 본 내용이기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계속 논의된 것은 재수사와 보완수사 요구했을 때 7대 범죄로 할 것이냐 중대범죄로 할 것이냐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논의의 대상은 이러한 재수사, 보완수사 말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을 때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 현저한 법령 위반이 있다고 검사가 인지를 했거나 피해자나 고발인의 신고가 있을 때 검사는 수사기관에 이것을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송부를 할 수가 있어 ‘기록 보내’, 기록 송부 요청을 해서, 송치가

아니라, 송부. ‘나한테 조금씩 보내’, 그것을 기록을 까 보고 ‘이게 사실이네, 문제가 있네’ 그러면 시정조치요구를 하지요. ‘고쳐’, 그런데 경찰에서 고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았을 때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을 나한테 보내’, 이게 송치입니다. ‘아니, 그걸 다른 수사기관에게 보내’ 이게 이송인 경우인데 여기 나오는 이송은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7대 범죄로 한정할 것이라는 게 행안부 의견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논한 것처럼 재수사와 보완수사가 똑같습니다 이 경우는 중대범죄를 포함시켜야지 맞습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중대범죄.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은 왜 중대범죄를 내야 되느냐, 이유는 재수사·보완수사 여부의 대상 범죄 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여기는 이송한 경우인데 이송한 경우도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도 7대 범죄에 한정할 게 아니라 중대범죄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중대범죄를 포함하는 것은 굳이 따로 법문에 표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일단 위원장님이랑 행안부 또 양부남 위원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신 바가, 이 경우 그 범죄는 1부터 7까지 범죄로 한정한다는 것은 일반범죄 중에서 보완수사·재수사 온 경우이기 때문에 중대범죄는 앞 조항에 따라서 당연히 중수청에서 보완수사·재수사 한다고 의미를 명확히 해 주셨습니다. 그 해석에 따른다면 한정한다는 부분은 고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해석에 따르면.

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은, 1장짜리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앞 부분에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맞춰서 보완수사 요구의 주체를 하나 넣었습니다. 즉 지청의 장을 넣은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가 일단은 중대범죄는 다 된다 그리고 일반범죄는 사회적 약자여야 된다는 부분은 정리가 된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다만 추가적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재수사와 보완수사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시정조치에 따른, 이송 요구에 따른 이송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이걸 당연히 추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 의견도 마찬가지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정한다 그 부분은 따로 법문을 수정을 안 해도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그것은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명확히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대로 두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소위원장 이해식**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범죄 중에서는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 그리고 이 조문이 들어가면 시정조치요구까지 포함해서 공소청의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 혹은 보완수사 아니면

시정조치요구를 할 경우에는 일반범죄는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정하고 중대범죄는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그러면 됐지요?

○양부남 위원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1소위에서 정해진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 6건이 상정·논의될 예정입니다. 그 6건 중에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우리 법안1소위 소관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이 2건의 법안이 전체 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우리 소위에서 미리 살펴봄으로써 내일 전체회의의 법안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이 논의 방식은 공식적 심사 절차는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께서 2건의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정부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순서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먼저 1장짜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개혁 후속조치 관련 법률안은 행안위의 경우 총 6건으로서 형사사법개혁에 따라 새로운 형사체계와 맞지 않는 기존 법률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장짜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6건 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건, 지방세기본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저희 법안1소위와 관련입니다. 2건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및 수정의견 주요내용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첫째, 교정시설·유치장에 유치된 사람에 대한 지방세 서류 송달 관련입니다.

지방중수청에도 유치장이 설치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의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관서의 유치장으로 확대하고 ‘국가경찰서의 장에게 송달’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송달 등’으로 확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범칙사건조사 공무원 지명권자와 관련하여 현행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세무공무원 중 범칙사건조사 공무원을 지명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압수물건의 인계와 관련하여 현행은 지자체장은 지방세 범칙행위자를 고발한 경우 압수한 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게 인계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함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검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셋째와 관련해서는 간단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2항을 보시면 보관증 인계 대상에서도 검사를 삭제하는 것이 체계에 맞을 듯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행 하단에 보시면 1항에는 검사가 빠져 있는데 2항에는 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계상 검사를 빼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및 수정의견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검찰청 직원을 삭제하고 공소청 직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데 적용 대상의 구체화를 위해 공소청 직원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으로 수정하고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현행 검찰청 직원이 입은 재해의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부칙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검찰청 직원이 부당하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먼저 행안부 관련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의견 말씀드리면요 28조에 지금은 그냥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수청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방중수청 유치장을 포함하는 개념인 ‘경찰서 등 수사관서의 유치장’ 이렇게 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2항도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13조는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125조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항은 검사를 삭제했는데 개정안에서 2항은 검사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1·2항 모두 검사 삭제하는 그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험직무순직에 공소청 직원을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혹시 위원님들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시나리오에 의견이 있다고 돼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전체회의에서 상정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소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법안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안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박정현 양부남 이해식 임호선 정춘생 채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 황승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지방세제국장 이현정

정책기획관 이지성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단장 이승재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검사 최준환